###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최정순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 268 발의년월일 : 2018년 11월 27일

발 의 자:최정순,서윤기,문장길,김춘례,

유정희, 이광성, 김태수, 김기덕,

송명화, 김정환, 김생환, 김제리

의원(12명)

#### 1. 제안 이유

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선도적 전환 및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정책개발 및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에너지 정책위원회 위원 수를 조정하고 분과위원회를 신설하여 위원회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 골자

가. 에너지정책위원회 위원 수를 50명으로 함(안 제12조제2항)

나. 실행위원회를 대체하여 에너지정책위원회 내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함 (안 제12조제5항)

## 3. 참고 사항

가. 관련 법령

나. 예산 조치 :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

다. 기 타:

1)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항 중 "30명"을 "50명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"민관 협력하에 사업을 실행하고 평가하기 위한 실행위원회"를 "위원회에 분과위원회"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(생 략)	제12조(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(현행
	과 같음)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	② <u>50명</u> -
내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시민단체·	
종교계·경제계·학계·교육계·언론계 등 각	
사회계층에서 명망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	
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, 위원장은 시장과	
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2명으로 한	
다.	
③ ~ ④ (생 략)	③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	<b>⑤</b>
위하여 민관 협력하에 사업을 실행하고	<u>위원회에 분과위원회</u>
평가하기 위한 실행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	
할 수 있다.	
⑥ (생 략)	⑥ (현행과 같음)